

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17-1354호

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

(장위15재정비촉진구역)

1.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4항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4조의3제3항제4호에 의거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장위15재정비촉진구역은 토지등 소유자의 3분의 1 이상이 정비구역해제 요청하여 구역해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주민의견조사 결과,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 미만으로 조사되어 서울특별시시장으로부터 직권해제 대상구역으로 통보되었음을 공고합니다.
2. 본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을 경우 공고기간 내에 우리구(주거정비과)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7년 11월 09일

성 북 구 청 장

가. 공고기간 : 2017.11.09. ~ 2017.11.29.(20일)

나. 직권해제 대상구역

연번	구역명	위 치	직권해제 이유	근거
1	장위15재정비 촉진구역	성북구 장위동 233-42 일대	· 추진위 승인일('10.7.9.)부터 3년 이내 조합설립인가 미신청 · 추진위원회가 총회를 2011.5.3. 이후 2년 이상 미개최 · 주민의견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100분의 50미만	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4조의3 제4항

다. 의견 제출

1) 제출기간 : 2017.11.09. ~ 2017.11.29.

2) 제출방법 : 의견서를 작성하여 성북구청(주거정비과) 방문, 우편 또는 팩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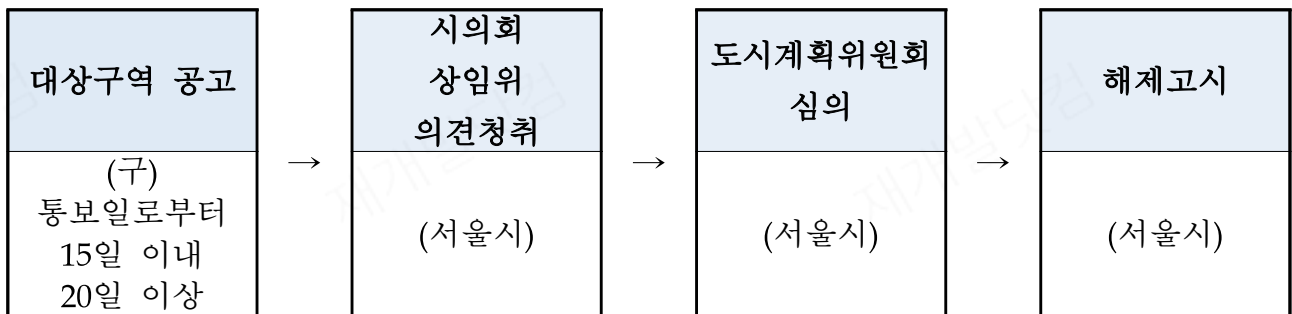
3) 제출사항

- 의견제출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 법인명 및 대표자 성명), 주소, 생년월일 등
- 직접해제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

4) 제출처

- 우편 또는 직접방문 :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, 성북구청 주거정비과(9층)
- 팩 스 : 02-2241-6545

라. 향후 절차



마. 문의 :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☎ 02-2241-2835 ~ 2836